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5. 19.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3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사회) 제6차 행정위원회 상정 보류  
1999년 5월 17일 제64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 재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허숙조)

- 가. 제안이유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95. 12. 29)으로 전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95. 1. 5)의 제정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1. 목적(안 제1조)
  -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2. 수수료 및 진료비(안 제2조)
  - 체력측정 수수료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신설
3.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와 감면(안 제3조)
  -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측정은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골밀도측정은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 일부와 의료보험 청구액으로 진료하는 방법과 진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적는데 비해 구세입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많으나 구세입이 늘어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체력측정을 받는 이는 어려운 경제 하의 살림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료로 진료를 할 때에 보건소 의료진의 신뢰도와 일반 의·병원의 일반수가를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타구 보건소와도 수수료 수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1999. 3. 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95. 12. 29)으로 전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95. 1. 5)의 제정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구민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나. 수수료 및 진료비(안 제2조)

- 체력측정 수수료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신설

다.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와 감면(안 제3조)

-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14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나. 입법예고 : '99. 2. 3 ~ 2. 25(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로 한다.

제2조중 제2항의 6호 다음에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체력측정 수수료
- 8. 골밀도측정 수수료

제3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

[별표] 수수료액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7. 건강증진센터	가. 체력측정 수수료	1회	3,3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8. 골밀도실	나. 골밀도측정 수수료	1회	6,6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u>보건소법 제8조의</u>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③ 생략</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생략 ② 생략</p>	<p>제1조[목적] .....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체력측정 수수료(신설) 8. 골밀도측정 수수료(신설)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와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u>(신설)</p>

[별표]

### 수 수 료 액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7. 건강증진센터	가. 체력측정 수수료	1회	3,3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8. 골밀도실	나. 골밀도측정 수수료	1회	6,6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5. 1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5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5월 18일 제64회(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정비 및 규제 법령의 폐지·완화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처리신고의 일원화(안 제8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자·봉투판매인과 계약체결시 후불제물 원할 경우 손실보전,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확보수단 신설(안 제23조의2)
  - 봉투 현금교환시 교환확인서 발부 폐지(안 제24조제2항, 제3항)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개혁법에 의거 규제의 정비에 근거하여 법령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내용, 불합리한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
------------	----

제출년월일 : 1999. 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